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 : 2024. 03. 01.

제33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시행 : 2023. 09. 01.

제2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2.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해당 부서장이 정한다.

제28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취득예정자는 즉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위논문을 책자로 제본하여 본교 중앙도서관장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윤리)

① 연구 관련자(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위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등)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그 작성과정 등이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학위 취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반대학원내규

시행일 : 2024. 03. 01.

제58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등록을 모두 마친 재학생 또는 연구등록을 마친 수료생
 2.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3.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4.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연구윤리 교육을 받은 자
 6. 제64조의 논문게재 요건을 충족한 자
-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3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 ①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부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논문게재요건)

- ① 석사과정의 졸업요건은 [별표6]과 같으며, 논문게재(신청)증명서 또는 발표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내규를 따르고, 학위청구논문대체학과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시행세칙 졸업요건에 따른다.
- ②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은 계열 또는 전공에 따라 [별표6]과 같으며,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게재 신청 또는 게재는 제1항, 제2항과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 ④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

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⑥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본교 또는 본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장 학위청구 논문의 대체

제65조(논문의 대체 내용) 석사학위과정의 청구논문은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 과목 6학점 이상 추가 취득, 졸업작품 제출, 졸업시험 합격, 인턴십 보고서 제출, 국내·외 저명 학술지 발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하에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6조(논문의 대체 방법)

- ① 석사학위 과정의 청구논문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신청하고 해당 부서장이 승인한다.
- ② 논문 대체 내용은 각 학과 교육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③ 논문 대체자의 경우 학위지도교수를 배정하며, 학위지도교수 요건은 학칙 제53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준한다.
- ④ 논문 대체자는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⑤ 각 학과에서는 논문 대체 내용과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6] 논문게재요건

| 학위과정 | | 구분 | 내용 |
|------|---|---------|---|
| 석사과정 | | 한국연구재단 |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게재(신청 포함) |
| | | 국제 학술지 | SCIE, SSCI, A&HCI, E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신청 포함) |
| | | 학술대회 발표 | 국제학술대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
| 박사과정 |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과학계열의 지 리학박사 한의학계열의 의사 학, 원전학, 한의교육학 전공 | 한국연구재단 | 등재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포함) |
| | | 국제 학술지 | SCIE, SSCI, A&HCI, ESCI,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포함) |
| | 자연과학·공학·의 학계열 | 국제 학술지 | SCIE,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게재(예정 포함) |